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26
----------	------

2018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8년 3월 20일
- 다. 회부일 : 2018년 3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변서영)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공연장 감면 규정 등의 “직접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등 공제세액의 금액을 정함(안 제16조).
- 다. 기타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 11 ~ 2018. 1. 31) 결과 : 1건

내 용	반영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제2조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변경 요구 - 2016.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당시 2018년 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요건이 2019. 1.1.로 시행 유예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미반영 (‘18.1.1.부터 기 시행중)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의 개정(시행 2018.1.1.) 사항을 반영(안 제16조)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보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제22조)하려는 것임.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신설(안 제16조)

- 안 제16조제1항은 세액공제를 기존의 자동계좌이체에 더하여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자동이체까지 확대하는 「법1」 개정사항(제92조의2)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로 인하여 절감되는 징세비용(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2018.1.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자동이체납부 등 세액공제 법92조의2> ○ (공제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시 공제 추가 ○ (공제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자동계좌이체</td> <td>150원 ~ 500원</td> </tr> <tr> <td>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td> <td>300원 ~ 1000원</td> </tr> </tbody> </table>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 ~ 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 ~ 1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이체</td> <td>150원 ~ 500원</td> </tr> <tr> <td>전자송달</td> <td>150원 ~ 500원</td> </tr> <tr> <td>전자송달+자동이체</td> <td>300원 ~ 1000원</td> </tr> </tbody> </table>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 ~ 500원	전자송달	150원 ~ 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 ~ 1000원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 ~ 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 ~ 1000원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 ~ 500원														
전자송달	150원 ~ 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 ~ 1000원														
	*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or 계좌 자동이체														

- 1)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략)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략)

○ 다만, 세액공제액은 기존 제도 하에서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동일한 150원을(법정 150~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신용카드자동이체 포함)’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동일한 500원(법정 300~1,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정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인 세액공제액(150원, 500원)이 자동이체 등 납부 활성화 유인책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 비용절감 실효성, 전자고지 마일리지와의 중복 혜택 여부 등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광역시도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좌이체	전자송달 + 계좌이체	구 분	계좌이체	전자송달 + 계좌이체
공제범위	150~500	300~1,000	공제범위	150~500	300~1,000
서울	150	500	강원	150	300
부산	150	500	충북	150	300
대구	300	700	충남	150	300
인천	150	500	전북	150	300
광주	150	500	전남	150	300
대전	150	500	경북	150	300
울산	150	500	경남	150	300
세종	150	300	제주	500	1,000
경기	150	300			

〈개정 전·후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금액 비교(‘17년 신청건수 기준)〉

(단위 : 건/원)

구분	현행		개정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계좌자동이체 납부	443,550	66,532,500	443,550	66,532,500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	-	4,589	688,350
전자송달 납부	-	-	970,753	145,612,950
전자송달+계좌자동이체 납부	213,959	106,979,500	213,959	106,979,500
전자송달+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	-	5,184	2,592,000
합 계	657,509	173,512,000	1,638,035	322,405,300

※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18년도 추가 공제 예상액(B-A) = 148,893,300원

- 또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자납세자’에게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건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세액공제에 더하여 마일리지를 중복 지원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재무국의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지원 비교〉

(단위 : 원)

구분	세액공제	마일리지 적립		총 혜택 (공제+마일리지)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납부세액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 자동이체납부	500	500		1,000
전자송달 + 자동이체 외 전자납부	150	500	1,000	650/1,150
자동이체납부	150	-		-

- 2017년 서울시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 적립 지원액 : 927,683건, 552백만원
- 부산시의 경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전자고지마일리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규 적립 없이 기 적립된 마일리지 소멸될 때까지 존치하기로 함.(출처 : <https://etax.busan.go.kr/>)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서울시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공마일리지와 금융기관 등의 민간포인트까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징세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전자고지·납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전자고지율 : 총 15,444,710건 중 1,267,695건(8.2%), 전국평균 5% 수준(부산 1.9%)

- 아울러 재무국은 본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지원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액 규모가 공제 및 적립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절감된 징세비용을 해당 예산(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편성에 조속히 반영하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집행잔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전자송달로 인한 예산 절감액 추계〉

(단위 : 건, 천원)

구 분	예산절감액 (A-B-C)	세수증가 요소	세수감소 요소	
		징세비용절감액(A) (고지서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	세액공제(B)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세감면조례	마일리지 적립(C)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건수	219,562	1,267,695	213,959	927,683
금액		878,403	106,979	551,862
건당평균(원)	173	693	500	595

※ 마일리지는 개인납세자에만 적립됨

※ 평균값 : 항목별 개별 산출(법인/개인, 일반/등기 등 사유)

※ 징세비용 : 고지서 제작(건당 70원)+우편요금(건당 일반 330원, 등기 1,960원 적용)

〈징세비용 절감 반영 대상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2015	862,399	708,685	82.2	153,714
	2016	830,687	704,585	84.8	126,102
	2017	857,007	689,882	80.5	167,125
	2018	814,165	-	-	-

다.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제22조)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안 제2조 등에서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2조	취득세 또는	취득세와	법 규정과 일원화 (지특법 vs 감면조례)
4조	사용하는	사용(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용어 정의 명확화 (지특법 정의 인용)
5조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띄어쓰기
5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	띄어쓰기
5조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띄어쓰기
5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	띄어쓰기
5조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경우	알기쉬운 법령정비
5조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잘못된 따옴표 삭제
19조	제2항의 규정	제2항	알기쉬운 법령정비
20조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21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문구정비
22조	감면함에 있어	감면할 때	알기쉬운 법령정비

라. 개정안 유효기간(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정성(부칙 제3조)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유효기간)는 본 개정안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운영의 효율화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사항의 일괄일몰 방식을 개별(조항별) 일몰방식으로 변경하여 전체 감면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되던 것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같은 법 제4조²⁾(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에서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 개정안의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 감면제도 조항별 일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이에 대해 재무국은 본 조례가 금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대상 정비를 위한 전부개정을 검토하면서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한편 본 개정안에 포함된 용어 등 정비사항은 전부개정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 한편, 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2018. 1. 11 ~ 2018. 1. 31) 기간 중 재무국 세무과는 본 조례개정안과는 별개의 사안인 동 조례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2016.12.30.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여 '장애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시행시기가 2018.1.1.이던 것을 2017.12.29. 동 시행령 부칙 제1조의 시행시기를 2019.1.1.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3항의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규정 시행시기를 적용한 동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중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례 운영 부서인 재무국 세제과에서는 본 조례 부칙 1조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대한 감면)가 2018.1.1.부터 이미 시행되어 2개월여 경과한 점, 본 조례가 2018.12.31.자로 일몰되어 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적은 점 등을 들어 행정의 일관성 및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호를 이유로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바 있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6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연장 감면 규정 등의 “직접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등 공제세액의 금액을 정함(안 제16조)
- 다. 기타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1. 11 ~ 2018. 1. 31)결과 : 의견있음(1건, 미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항 중 “취득세 또는”을 각각 “취득세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하는”을 “사용(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후단 중 “법 제184조의 규정을”을 “법 제184조를”로 한다.

제21조 중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중 “감면함에 있어”를 “감면할 때”로,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법 제180조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2조의2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 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

-.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

---- 사용(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③ ----- 적용할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조
----- 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

-----.

1. 2.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략)

제19조(감면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항 -----

-----.

④ -----

----- 제2항 -----

-----.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법 제184조를 -----
--.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

-----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

----- 감면할 때 -----

-- 법 제180조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그에 따라 공제 세액이 증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전자송달 등 세액공제 범위의 확대로 연간 약 1.5억원*의 비용 발생 예상

* 975,342건(전자고지 또는 신용카드) × 150원

+ 5,184건(전자고지 및 신용카드) × 500원 = 148,893,300원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2133-3357)